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창작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디자인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디자인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증가

-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비효율 초래
- 2) 현행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 3) 디자인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0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디자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디자인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를 “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디자인공보) ① ~ ③ (생략)	제10조(디자인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u>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u>	④ ----- ----- ----- ----- 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연 락 처	(042) 481 - 3570